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6. 12일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어촌 주민의 약 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의 운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
-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검사 강화 및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다만 개정조례 제13조는 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간이시설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와 시설관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20조 규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표자”를 “시설관리종사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이 조례와 관련한 시설의 관리대장, 정기·수시점검 대장의 작성과 보관 및 시설안내판의 설치등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빠짐없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반대토론 김관목 의원)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12조 단 서조항을 보면 “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갖 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지역인 경우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아 간이상수도 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수돗물은 허드렛 물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음을 감안할 때 간이 상수도 물이 수돗물 보다 수질이 양호하다면 굳이 시설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특히 간이상수도를 존치할 경우 단전 또는 상수도 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제12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 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코자 하며, 동조례 제13조의 경우 간이 급수시설의 대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는 현행 수도법상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로 보아 대표자와 업무종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정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이급수시설의 대표자”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 종사자로” 수정 의결하고자 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제출안	수정안
제1조~제11조(생략) 제12조(시설의폐지)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u>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3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u>간이급수시설의 대표자</u>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4조(생략) 부 칙 (생 략)	제1조~제11조(제출안과같음) 제12조(시설의폐지) ----- ----- ----- ----- -----. (삭 제) 제13조(건강진단) ----- ----- <u>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종사자</u> -----. 제14조~제24조(생략) 부 칙 (제출안과같음)